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
(최은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77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7. 6.

발 의 자 : 최은석 · 진종오 · 이종배  
안철수 · 구자근 · 강대식  
신성범 · 김상훈 · 한지아  
김성원 · 김장겸 · 이상휘  
서일준 · 송언석 · 김태규  
김기웅 · 이준석 · 박덕흠  
의원(18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기존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며, 이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.

지방의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주택 취득을 유도하고 생활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으므로 세제 혜택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

임(안 제71조의2).

법률 제 호

#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2026년 12월 31일”을 “2028년 12월 31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2026년 12월 31일”을 “2028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



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「소득세법」 제8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를 적용한다.

1. 2. (생략)

② 1주택을 보유한 1세대(「종합부동산세법」 제2조제8호의 세대를 말한다)가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인구감소지역주택 1채를 취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로 본다.

③ · ④ (생략)

-----  
-----  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2028년 12월 31일-----  
-----

③ · ④ (현행과 같음)